

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(제1차 정례회)  
제5차 본회의 【2014.9.15(월)】

2014년도 인천광역시  
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

# 심 사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 목 차

<b>I. 안건현황</b> .....	<b>3</b>
1. 회계구분 .....	3
2. 심사경과 .....	3
<b>II.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2차 변경계획안 개요</b> .....	<b>4</b>
1. 기금예산 규모 .....	4
2. 개별기금 조성규모 .....	5
3. 용자금 현황 .....	6
4. 지방채상환기금 변경 .....	7
<b>III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</b> .....	<b>8</b>
1. 기금운용 변경계획 제출 사유 .....	8
2. 지방채상환기금 변경계획 .....	9
<b>IV. 심사결과</b> .....	<b>11</b>
1. 중점심사내용 .....	11
2. 토론요지 .....	11
3. 심사결과 .....	11
4. 소수의견 .....	13
5. 기타사항 .....	13

## 1. 회계구분

가. 소관부서 : 인천광역시

나. 회계구분 :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제2차 변경계획안  
(지방채상환기금)

## 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. 8. 13.

나. 제출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4. 9. 4.

라. 상정일자 : 2014. 9. 11.

○ 제안설명 : 기획관리실장 박 준 하

○ 검토보고 : 수석전문위원 임 조 순

○ 질의 및 토론

○ 원안가결

II

##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개요

### 1. 기금예산 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경정액①	기정액②	증감(①-②)	비고
총 계	521,132,440	478,857,897	42,274,543	
	(378,574,928)	(336,300,385)	(42,274,543)	
통합관리기금	142,557,512	142,557,512	0	
남북교류협력기금	3,854,272	3,854,272	0	
시립대학발전기금	10,705,827	10,705,827	0	
지방채상환기금	89,480,062	47,205,519	42,274,543	기정액 대비 89% 증
중소기업육성기금	110,851,585	110,851,585	0	
에너지사업기금	23,483,847	23,483,847	0	
농어촌진흥기금	12,953,263	12,953,263	0	
지방세발전기금	341,967	341,967	0	
사회복지기금	9,729,426	9,729,426	0	
식품진흥기금	8,063,013	8,063,013	0	
여성발전기금	4,123,859	4,123,859	0	
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	26,308,597	26,308,597	0	
재난관리기금	46,261,522	46,261,522	0	
재해구호기금	32,417,688	32,417,688	0	

※ ( )안 통합기금제외 시 합계, 기정액은 2014년 8월 현재 현액기준

## 2. 개별기금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'13년도말 현재액 ㉑	'14년도 기금운용계획		'14년도말 현재액 ㉒=㉑+㉓-㉔	증 감 ㉕ - ㉑
		수입 ㉓	지출 ㉔		
총 계	350,188,306	170,944,134	284,928,291	236,204,149	△113,984,157
	(260,341,722)	(118,233,206)	(186,177,796)	(192,397,132)	(△67,944,590)
통합관리기금	89,846,584	52,710,928	98,750,495	43,807,017	△46,039,567
남북교류협력기금	2,918,521	935,751	3,214,800	639,472	△2,279,049
시립대학발전기금	10,444,710	261,117	0	10,705,827	261,117
지방채상환기금	44,624,830	44,855,232	82,000,000	7,480,062	△37,144,768
중소기업육성기금	48,185,654	62,665,931	84,250,000	26,601,585	△21,584,069
에너지사업기금	20,461,589	3,022,258	5,000,000	18,483,847	△1,977,742
농어촌진흥기금	12,051,427	901,836	725,070	12,228,193	176,766
지방세발전기금	48,215	293,752	341,967	0	△48,215
사회복지기금	9,350,427	378,999	570,000	9,159,426	△191,001
식품진흥기금	6,410,613	1,652,400	2,178,670	5,884,343	△526,270
여성발전기금	4,025,619	98,240	90,000	4,033,859	8,240
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금	25,453,069	855,528	807,289	25,501,308	48,239
재난관리기금	44,749,360	1,512,162	5,000,000	41,261,522	△3,487,838
재해구호기금	31,617,688	800,000	2,000,000	30,417,688	△1,200,000

### 3. 용자금 현황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'13년도말 현재액 ㉑	'14년도 기금운용		'14년도말 현재액 ㉒=㉑-㉓+㉔	증 감 ㉕ - ㉑
		수입 ㉓	지출 ㉔		
총 계	265,493,514	114,730,111	126,900,000	277,663,403	12,169,889
	(125,860,261)	(75,546,778)	(89,900,000)	(140,213,483)	(14,353,222)
통 합 관 리 기 금	139,633,253	39,183,333	37,000,000	137,449,920	△2,183,333
지 방 채 상 환 기 금	17,240,000	17,240,000	0	0	△17,240,000
사 회 복 지 기 금	327,000	0	300,000	627,000	300,000
식 품 진 흥 기 금	630,759	366,000	600,000	864,759	234,000
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	97,451,329	55,720,481	84,000,000	125,730,848	28,279,519
에 너 지 사 업 기 금	10,147,950	2,217,297	5,000,000	12,930,653	2,782,703
농 어 촌 진 흥 기 금	63,223	3,000	0	60,223	△3,000

## 4. 지방채상환기금 변경

### 1) 운용계획 변경

(단위 : 백만원 / %)

기금명	구분	수 입 계 획						지 출 계 획		
		계	전입금	융자금 회수	예탁금 상환금	예치금 회수	이자 수입	계	고유목적 사업비	예탁금
지 방 채 상환기금	당 초 (A)	47,206	1,602	603	30,000	14,628	372	47,206	30,000	17,206
	변 경 (B)	89,480	26,595	17,687	36,788	7,837	574	89,480	82,000	7,480
	증감 (B-A)	42,275	24,993	17,083	6,788	△6,791	202	42,275	52,000	△9,725
		(89.6)	(1560.1)	(2833.0)	(22.6)	(△46.4)	(54.3)	(89.6)	(173.3)	(△56.5)

### 2) 조성규모 변경

(단위 : 백만원 / %)

기금명	구 분	2013년도말 현재액 ①	2014년도 기금운용		2014년도말 현재액(d) ④=①+②-③	증 감 ④ - ①	증감율 (%)
			수입 ②	지출 ③			
지 방 채 상환기금	당 초 (A)	44,628	2,578	30,000	17,206	△27,422	61.4
	변 경 (B)	44,625	44,855	82,000	7,480	△37,145	83.2
	증감 (B-A)	△3	42,277	52,000	△9,726	△9,723	△324100
		(△0.0)	(1639.9)	(173.3)	(△56.5)	(△35.5)	

## 1. 기금운용 변경계획 제출 사유

- 인천광역시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 목적사업에 용자코자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로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1)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 「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및 각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운용·관리하고 있고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)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, 같은 법 제11조3)규정에 의거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
- 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중 「지방채상환기금」은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하여 설치·운용중인 기금으로
- 지방채상환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인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등이 증가함에 따라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됨

### 1) 지방자치법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### 2)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### 3)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려는(중략)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2. 지방채상환기금 변경계획

### 가) 수입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변경	당초	증감	증감율	주요 증감 변경 내역
계	89,480	47,206	42,275	89.6	
경상적 세외수입	460	605	△145	24.0	· 공공예금 이자수입 12백만원 · 민간용자금회수 이자수입 △157백만원
보전수입등	25,077	14,628	10,449	71.4	· 민간용자금회수 원금수입 17,240백만원 · 전년도 이월금 △6,791백만원
내부거래	63,943	31,972	31,970	100.0	· 일반회계 전입금 24,993백만원 ·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6,788백만원 · 예탁금 이자수입 190백만원

- 지방채상환기금의 수입은 당초 472억원 규모에서 89.6% 423억원 이 증가한 895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,
- 주요 증가 사유는 민간용자금회수 원금수입이 172억,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원,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68억원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
- 이중 일반회계 전입금(당초 1,602백만원 ⇒ 변경 26,595백만원)이 대폭 증가한 사유는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88,649백만원 발생하여 기금 조례<sup>4)</sup>에 규정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30%를 적립함에 따라 대폭 증가됨

4)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(기금의 조성)

② 인천광역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나) 지출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변경	당초	증감	증감율	주요 증감 변경 내역
계	89,480	47,206	42,275	89.6	
내부거래 지출	24,720	17,206	7,515	43.7	· 일반회계 지방채 상환 전출금 17,240백만원 · 통합관리기금 예탁 △9,725백만원
차입금 이자상환	2,760	0	2,760	신규	· 고금리 차환을 위한 이자상환 2,760백만원
차입금 원금상환	62,000	30,000	32,000	106.7	· 14년도 지방채 조기상환 32,000백만원

- 지방채상환기금의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(75억원)을 제외하고는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등 전액 기금의 목적사업비인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사용되는 것으로 편성하였음
- 이중 차입금 원금상환액은 당초 300억원에서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배이상 증가한 620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, 향후에도 부채비율 축소를 위해 기금의 여유가 발생할 때 마다 지방채 조기상환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

## IV

## 심사결과

## 1. 중점 심사내용

- 지방채상환기금 대폭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
- 대폭 늘어난 지방채상환기금의 활용계획은 무엇이며 향후 지방채상환 계획 등 기금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

## 2. 토론요지

- 1) 찬성 : 황인성, 최석정, 조계자, 김정현, 박종우, 손철운, 유제홍, 이영훈, 임정빈, 허 준 위원
- 2) 반대 : 없음

## 3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석위원 전원 찬성 : 9명)

## 3-1. 수 입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심 사 요구액	증 감 액		심사결과 기 금 액
		감액	증액	
총 계	521,132,440	0	0	521,132,440
통 합 관 리 기 금	142,557,512	0	0	142,557,512
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	3,854,272	0	0	3,854,272
시 립 대 학 발 전 기 금	10,705,827	0	0	10,705,827
지 방 채 상 환 기 금	89,480,062	0	0	89,480,062
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	110,851,585	0	0	110,851,585
에 너 지 사 업 기 금	23,483,847	0	0	23,483,847
농 어 촌 진 흥 기 금	12,953,263	0	0	12,953,263
지 방 세 발 전 기 금	341,967	0	0	341,967

기 금 명	심 사 요구액	증 감 액		심사결과 기 금 액
		감액	증액	
사 회 복 지 기 금	9,729,426	0	0	9,729,426
식 품 진 흥 기 금	8,063,013	0	0	8,063,013
여 성 발 전 기 금	4,123,859	0	0	4,123,859
도 시 및 주 거 환 경 정 비 기 금	26,308,597	0	0	26,308,597
재 난 관 리 기 금	46,261,522	0	0	46,261,522
재 해 구 호 기 금	32,417,688	0	0	32,417,688

### 3-2. 지 출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심 사 요구액	증 감 액		심사결과 기 금 액
		감액	증액	
총 계	521,132,440	0	0	521,132,440
통 합 관 리 기 금	142,557,512	0	0	142,557,512
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	3,854,272	0	0	3,854,272
시 립 대 학 발 전 기 금	10,705,827	0	0	10,705,827
지 방 채 상 환 기 금	89,480,062	0	0	89,480,062
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	110,851,585	0	0	110,851,585
에 너 지 사 업 기 금	23,483,847	0	0	23,483,847
농 어 촌 진 흥 기 금	12,953,263	0	0	12,953,263
지 방 세 발 전 기 금	341,967	0	0	341,967
사 회 복 지 기 금	9,729,426	0	0	9,729,426
식 품 진 흥 기 금	8,063,013	0	0	8,063,013
여 성 발 전 기 금	4,123,859	0	0	4,123,859
도 시 및 주 거 환 경 정 비 기 금	26,308,597	0	0	26,308,597
재 난 관 리 기 금	46,261,522	0	0	46,261,522
재 해 구 호 기 금	32,417,688	0	0	32,417,688

3-3. 수입 심사내역 : 변동 사항 없음

3-4. 세출 심사내역 : 변동 사항 없음

4. 소수의견 : 없음

5. 기타사항 : 없음